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1022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고등법원 2023. 2. 8 선고 2021나23113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 9. 10 선고 2019가합102241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이준행

피 고 1. B

2. C

3. D

위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진

담당변호사 함영주, 염옥남

피고(선정당사자) E

변론종결 2021. 6. 4.

판결선고 2021. 9. 10.

주 문

1. 선정자 F와 피고 B,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음식점(상호 : G, H)의 영업권 및 영업시설 일체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양도계약 및 권리포기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602,5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선정당사자) E, 선정자 F,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40,259,005원 및 그 중 28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86,9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위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E 및 선정자 I 사이의 대출약정

1) 원고는 2016. 10. 28. 선정자 I에게 300,000,000원[만기일 2017. 10. 28., 금리 연 9.5%, 연체이율 연 12.5%, 연대보증인 피고 E]을 대출하였다. 당시 선정자 I과 피고 E은, 그들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일반음식점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J카드, K카드, L카드 카드매출에 대한 집금계좌를 선정자 I이 원고를 통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설정하고, 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위 계좌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2) 원고는 2017. 5. 26. 피고 E에게 450,000,000원[만기일 2018. 11. 30., 금리 연 9.5%, 연체이율 연 12.5%, 연대보증인 선정자 I]을 대출하였다. 선정자 I과 피고 E은 이 사건 음식점의 M카드, N카드, O카드 카드매출에 대한 집금계좌를 피고 E이 원고를 통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설정하고, 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위 계좌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

3) 선정자 I은 2016. 10. 28.자 대출금 300,000,000원을 모두 상환하고, 2017. 11. 9. 원고에게 400,000,000원에 대한 재대출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선정자 I에게 400,000,000원[만기일 2019. 11. 10., 금리 연 9.0%, 연체이율 연 12%, 연대보증인 피고 E]을 대출하여 주었다. 선정자 I과 피고 E은 원고와 기존에 약정하였던 이 사건 음식점의 J카드, K카드, L카드, M카드, N카드, O카드에 추가로 P카드 카드매출에 대한 집금계좌를 선정자 I이 원고를 통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Q카드 카드매출에 대한 집금계좌를 피고 E이 원고를 통해 개설한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 설정하고, 위 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때까지 위 계좌를 변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원고의 동의없이 위 카드 집금계좌 설정을 해지할 경우 위 대출금의 기한이익이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2), 3)항의 각 대출계약을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2018. 1. 16. 선정자 F으로 변경되었고, 선정자 F은 2018. 2. 2.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양도

1) 선정자 F은 2018. 9. 17.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및 영업시설 등 권리 일체를 피고 B, C에게 양도하면서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영업시설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

2) 그 이후 피고 B, C은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권 및 영업시설 등 권리 일체를 피고 D에게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의 원리금 채권 현황

피고 E 및 선정자 F, I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데, 2019. 4. 16.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의 원리금합계는 아래와 같다.

- ① 2017. 5. 26.자 대출계약: 314,088,637원(미상환 원금 284,000,000원 + 정상이자 4,582,904원 + 연체료 23,542원 + 연체이자 25,482,191원)
- ② 2017. 11. 9.자 대출계약: 426,170,368원(미상환 원금 386,900,000원 + 정상이자 5,914,800원 + 연체료 29,168원 + 연체이자 33,326,400원)

라.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의 시가

한편, 2018. 9. 17.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의 가치는 384,014,000원이고, 영업시설물의 가치는 96,588,509원, 총 480,602,5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R감정평가사무소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시가감정보완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E 및 선정자 F,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및 선정자 F,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계약상의 원리금 740,259,005원(= 314,088,637원 + 426,170,368원) 및 ① 그 중 284,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그 중 386,9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201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당시 선정자 F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 및 영업시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는데,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은

원상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의 가액상당액인 480,602,5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전에 이미 선정자 F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무렵 선정자 F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음식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등 선정자 F이 채무초과 상태였던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당시 선정자 F은 이 사건 음식점 건물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해지통지를 받았고, 건물인도소송이 예정되어 있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가사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건물인도소송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현재 위치한 건물과 상당한 견련성을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인근의 다른 장소에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임차권이 이 사건 음식점 영업권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위 대법원 2013다84162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식점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체결된 이후 계속하여 운영되어 왔고 음식점 영업의 특성상 식자재의 소비와 구입이 빈번이 발생하고 기자재의 감가상각의 정도가 크며 기자재가 대체로 파손되기 쉬운 식기류로서 파손으로 인한 재구입이 빈번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이후 영업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선정자 F에게 회복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익자 피고 B, C 및 전득자 피고 D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범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9. 17. 현재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의 가치가 384,014,000원, 영업시설물의 가치가 96,588,509원, 총 480,602,50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영업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음식점 매출 산정시 2018년도 분은 제외하고 2015년 내지 2017년도 분을 적용하여 1 : 2 :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② 고속성장기 기업가치와 안정성장기 기업가치는 식당 폐업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정한 것으로 부당하며, ③ 실제 매출액은 감정평가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피고들 주장의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시가감정촉탁결과 및 시가감정보완결과를 도출하는데 사용된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위 피고들은 영업시설물의 평가와 관련하여, ① 43,200,000원으로 평가된 향아리(감정평가서 59쪽)의 소유자는 S인데, 2020. 9. 5. T과 U이 S로부터 위 향아리의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② 영업시설물 평가액에 포함된 이 사건 음식점의 대기실, 장독받침대는 안산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아 2020. 10.경 철거되었으므로, 이 사건 음식점의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이라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전부의 급부 의무를 지면서도 1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결국 양자의 가액배상 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영업권 양도계약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수익자인 피고 B, C 및 전득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0,602,5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영호, 판사 박형민, 판사 문 혁

(별지)

목 록

안산시 상록구

[도로명주소] 안산시 상록구

조립식판넬 및 경량철골조경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사, 주택

1층 125.46㎡ (일반음식점)

65.78㎡ (부속사)

5.70㎡ (근린생활시설)

2층 103.02㎡ (주택)

중 1층 125.46㎡ (일반음식점), 65.78㎡ (부속사), 5.70㎡ (근린생활시설)
끝.

별지

선정자명단

1. E

2. F

3. I

끝.

